

투자약정서

(전환사채 인수방식)

유관본 : 금고납관

2017년 5월 31일

투자자 : 현대기술투자(주)

피투자기업 : (주)라이테크

투자약정서

(전환사채 인수방식)

I.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

II. 본문

제 1 장 사채의 인수에 관한 사항

제 2 장 전환사채의 내용

제 3 장 거래완결 후 피투자기업 경영에 관한 사항

제 4 장 거래완결 후 지분의 처리에 관한 사항

제 5 장 위약벌

제 6 장 계약의 종료 등

제 7 장 특약사항

III. 별지

별지 1 진술과 보장

별지 2 투자금의 사용용도

별지 3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

별지 4 전환사채 상환계획표

IV. 첨부서류

- 주주명부 1부
- 재무제표 1부
- 정관 1부
- 상업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 1부
-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
- 이사회의사록 1부
- 인감증명서 1부
- 기타 참고서류

당사자 및 이해관계인

1. 투자자

현대기술투자(주)
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66 빌딩 M 5 층(삼성동)

대표이사 권토마스오윤



2. 피투자기업

주식회사 라이테크(법인등록번호: 110111-4999392)
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354-6

대표이사 신동훈



3. 이해관계인

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서명	날인
신동훈	690802-1908511	서울 강동구 상암로 3길 77 삼성광나루아파트 104-707 (암사동 508 번지)		

- 이 하 여 백 -



본 문

아래의 당사자들은 [2017]년 [5]월 [18]일 기체결한 [전환사채] 투자약정서(이하 "원 계약(서)")관련, [2017]년 [5]월 [31]일 다음과 같이 [전환사채] 투자약정서(이하 "본 계약(서)")를 추가하여 체결한다.

1. 투자자 :

현대기술투자주식회사 (이하 "투자자")
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66 빌딩M 5층(삼성동)
대표이사 권토마스오윤

2. 피투자기업 :

주식회사 라이테크(법인등록번호: 110111-4999392) (이하 "피투자기업")
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354-6
대표이사 신동훈

3. 이해관계인 :

신동훈 (주민등록번호: 690802-1908511) (이하 "이해관계인")
서울 강동구 상암로 3길 77 삼성광나루아파트 104-707 (암사동 508번지)



다음



제1장 사채의 인수에 관한 사항

제1조 사채의 발행과 인수

① "피투자기업"은 "본 계약"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(이하 "본건 전환사채")를 발행하고, "투자자"는 "본 계약"에 정해진 조건대로 이를 인수한다.

1. "피투자기업"의 상호 : 주식회사라이테크
2. "본건 전환사채"의 명칭 : 제[2]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
3. "본건 전환사채"의 종류 : 기명식 전환사채
4. "본건 전환사채"의 권면총액 : 금이억원정(₩200,000,000원)
5. "본건 전환사채"의 권면금액 및 권종수 : 금일억원권 [2]매
6. "본건 전환사채"의 발행가액 :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%
7. "본건 전환사채"의 이율 : 표면이율 연 [0]%,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[6]%
8. "본건 전환사채"의 발행일 : [2017]년 [5]월 [31]일
9. "본건 전환사채"의 만기일 : [2022]년 [5]월 [31]일
10. 투자자의 "본건 전환사채" 인수금액

투자자명	배정할전환사채 총액	권면금액 및 권종수
현대기술투자(주)	₩200,000,000원	금일억원권 2매

11. "본건 전환사채"의 원리금 지급 장소 : 하나은행 196-910014-24304
예금주 현대기술투자
12. "본건 전환사채"의 분할 및 병합 : "피투자기업"은 "투자자"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0호의 액면금액 및 권종수를 분할 또는 병합하기로 한다.
13. "투자자"의 조기상환청구권 : "피투자기업"은 "본건 전환사채"의 발행일로부터 [1]년이 되는 날인 [2018]년 [5]월 [31]일로부터 "본건 전환사채"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[6]%로 하고, "피투자기업"은 "투자자"가 상환을 청구한 날로부터 1개월 내의 기간에 해당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.
- ② "피투자기업"은 납입기일로부터 [1]영업일 전까지 "투자자"에게 "본건 전환사채" 인수대금의 납입을 위한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를 통지하여야 하고, "투자자"는 납입기일에 "본건 전환사채"의 인수대금 전액을 "피투자기업"이 통지하는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.
- ③ "피투자기업"은 발행일에 "본건 전환사채"를 발행하고 전환사채의 상업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④ "피투자기업"은 발행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"투자자"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1. "본건 전환사채"의 사채권, 단 사채권 발행 교부 전까지 사채권은 사채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사채권 미발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.
 2. "본건 전환사채"의 인수 대금 납입 영수증
 3. 기타 "본 계약"상의 전환사채 발행을 적법,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"투자자"가 요청하는 자료

제2조 ~ 제4조 : "원계약"과 동일함

제5조 거래 완결 전 해제



- ① "본 계약"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귀책 사유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. 단, 거래 완결 후에는 ("본 계약" 제26조에서 정한 지분 매수 요구는 별론으로 한다.) "본건 전환사채"의 발행 및 인수 자체를 해제하지는 못한다.
1.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
 2. 일방 당사자가 "본 계약"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(진술과 보장 위반 포함) 상대방의 통보를 받은 후 [5]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
 3. 선행조건 불 충족, 기타의 사유로 거래 완결이 [2017]년 [6]월 [7]일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및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해 진 경우

② 본 조에 의한 계약 해제 시 귀책 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6조 : "원계약"과 동일함

제7조 거래의 완결

- ① "투자자"는 [2017]년 [5]월 [31]일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 소정의 선행 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인수 대금 전액을 "피투자기업"이 지정하는 은행지점의 별단계좌에 납입한다. 인수 대금 전액이 위 별단계좌에 납입된 때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, 이 날을 "본 계약"에서 "거래완결일"이라 한다.
- ② "피투자기업"은 "거래완결일"에, 본 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 완결되는 것을 조건으로, "본



건 전환사채" 전부에 대한 사채권을 "투자자"에게 교부한다.

③ "거래완결일"로부터 [1]주일 이내에 "피투자기업"은 필요한 상업등기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, 법인등기부등본, 주주명부, 기타 "본 계약서" 상의 "본건 전환사채"의 발행과 인수를 적법,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"투자자"가 요청하는 자료를 "투자자"에게 교부한다.

제8조 ~ 제40조 : "원계약" 과 동일함

계약 체결일 : [2017].[5].[31].

"투자자"

현대기술투자주식회사
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66 빌딩M 5층(삼성동)

대표이사 권토마스오윤

"피투자기업"

주식회사피드업
충북 음성군 읍내면 음성로 2354-6

대표이사 신동훈 (인)

"이해관계인"

서울 강동구 상암로 3길 77 삼성광나루아파트 104-707
(암사동 508번지)
주민등록번호 : 690802-1908511

신동훈 (인)



[별지1] 진술과 보장 : "원계약"과 동일함



[별지2]

투자금 사용용도

"피투자기업"은 "본 계약"에 의하여 "투자자"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"투자자"는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"투자자"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본 투자약정 이후 언제든지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.

용 도	금 액	비 고
운영자금 및 설비투자비	200,000,000원	원부자재, 인건비, 미지급금, 설비투자비
합 계	200,000,000원	

- 이 하 여 백 -



[별지3]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 약정서 : "원계약"과 동일함



[별지4]

전환사채 상환계획표

(단위 : 원)

지급일자	원금	이자	합계
2022. 5. 31	200,000,000	67,645,116	267,645,116

